

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계약목적	①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하며,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급여계약	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(단, 양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 만료 전에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한다)
계약해지	①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다른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④ 장기이용 비용을 여러번 지체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<노인장기요양보험법>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하는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정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배상 책임보험	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
[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비용(본인부담금 30일 기준)]

구분	1등급	2등급	3~5등급
1일단 비용	90,450	83,910	79,240
비급여(식재료+간식비)	420,000	420,000	420,000
본인부담금 (8%)	214,080	201,384	190,176
본인부담금(12%)	322,080	302,076	287,264
본인무담금(20%)	542,700	503,460	475,440

급여비용	세부내용	산출근거	금액
음식재료비	식비/간식비	(식비)4,000원× 3회(간식) 1,000원×2회	일 14,000원
경관영양유동식	처방 및 진료에 따름	실비	실비

맘편한요양원(031-889-9989)